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5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강대식 · 고동진
권영세 · 서명옥 · 김기웅
김태규 · 이종배 · 김승수
김상훈 · 이상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,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.

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는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,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‘정당의 당원’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

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,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,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).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통령은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1조의2제2항 중 “10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“1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“3명”을 “3명(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관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법관의 임명) ① (생략)	제41조(법관의 임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 <후단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대통령은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1조의2(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) ① (생략)	제41조의2(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0명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11명</u> ----- ----- 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대법관이 아닌 법관 <u>1명</u>	7. ----- <u>2명</u>
8.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<u>3명</u> . 이 경	8.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명(이 경우</u>

<u>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.</u> ④ ~ ⑨ (생 략)	<u>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).</u> <u>다만,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</u> <u>른 당원 또는 「공직선거법」</u> <u>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</u> <u>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</u> <u>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</u> <u>람은 제외한다.</u> ④ ~ ⑨ (현행과 같음)
---	---